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233
----------	------

발의연월일 : 2016. 11. 2.

발의자 : 안상수 · 김성찬 · 이만희  
이양수 · 권석창 · 이군현  
김철민 · 김한정 · 김현권  
홍문표 · 김순례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하여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을 지정하여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가공, 저장 및 유통시설 단지 등의 용도로 간척지를 개발하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는 수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행위로서 간척지활용사업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로 분류되어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이에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중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행위를 제외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전단 중 “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양식, 식물재배 등의 행위로서”를 “행위로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간척	제13조(행위 등의 제한) ① -----
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
형질변경, 토석·자갈·모래의 채	-----
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	-----
는 <u>행위</u> , 수산동식물의 <u>포획·양</u>	-----
식, <u>식물재배</u> 등의 <u>행위로서</u> 대	--- <u>행위로서</u> -----
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	-----
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
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	-----.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